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통리장 정수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통·리장의 정수 조정 (별표)
 - 통·리 : 573개 통리⇒587개 통리로 조정(통리장수 14명 증)
 - 산동면 감 1개리 : 봉산1,2리 → 봉산리
 - 도량동 증 1개통 : 도산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(36통)
 - 선주원남동 증 2개통 : e-편한세상 아파트 신축(44, 45통)
 - 상모사곡동 증 3개통 :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 및 분통 (30~32통)
 - 임오동 증 2개통 :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신축(21~22통)
 - 양포동 증 7개통 : 삼구트리니언, 현진에버빌, e-편한세상 아파트 신축(34~40통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,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73명에서 도량동 증1, 선주원남·임오동 각 증2, 상모사곡동 증3, 양포동 증7 등 15명이 증가되면서 산동면 감1명으로 총14명이 증가된 587명으로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